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7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p> <p>① ~ ⑤ (생략)</p> <p>⑥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 등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의 해지의사 확인을 통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이 서면으로 해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제7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8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u></p> <p><u>1.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 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u></p> <p>⑦ <u>제6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u></p> <p>⑧ <u>카드사는 제6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u></p>	<p>- 여전법 감독규정 (제24조의11) 일부개정안 반영</p>
<p>제16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p> <p>① ~ ② (생략)</p> <p>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p>	<p>제16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u>1.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u></p>	<p>- 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관련 문구 정비</p>

<p>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신 설></p> <p>2. ~ 3. (생략)</p> <p>④ (생략)</p> <p>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p> <p>1. 제3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p> <p>2. 제3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p> <p>⑥ ~ ⑦ (생략)</p>	<p><u>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u></p> <p>2.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u>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u>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u>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u>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p> <p>1. 제3항 제1호, <u>제1호의2</u>, 제2호 : 사유발생 즉시</p> <p>2. 제3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감독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통지 방법 문구 정비</p>
<p><신 설></p>	<p><u>제16조의 1(카드 이용내역 표시)</u></p> <p><u>① 카드사는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단, 결제대행업체의 전산 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u></p>	<p>- 권익위·금융위의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개선 제안사항('21.3월) 반영</p>
<p><신 설></p>	<p><u>제28조 (경과조치)</u></p> <p><u>① 제16조 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u></p>	<p>- 포인트 반올림 및 절상 적용일자 표기</p>

	<p>② 제7조 제6항 및 제7항의 '전자문서' 추가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p> <p>③ 제16조의1 제1항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면신용카드 관련 고지수단 변경사항의 적용일자 표기 - 카드 결제내역 표시개선 적용일자 표기
제28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생략)	제29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현행과 같음)	- 조 번호 내림
제29조 (관할법원) (생략)	제30조 (관할법원) (현행과 같음)	- 조 번호 내림
제30조 (유보사항) (생략)	제31조 (유보사항) (현행과 같음)	- 조 번호 내림